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2. 13 선고 2023가단15767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엠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유태훈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국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황영준, 변호사 임은경, 법무법인 에이치앤케이 변호사 이강혁

변론 종결2024. 11. 1.

판결 선고2024. 12. 13.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2020. 8.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20,340,14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340,14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20. 7. 14. D에게 대전 동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55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50,000,000원은 매매계약 당일, 중도금 400,000,000원은 2020. 7. 20., 잔금 100,000,000원은 2020. 8. 21.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은 2020. 7. 17. D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20. 7.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D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20. 7. 13. 계약금 50,000,000원 중 5,000,000원, 2020. 7. 14. 나머지 45,000,000원을 C에게 각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이하 'G저축은행'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475,200,000원, 채무자 C으로 된 2020. 3. 18.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D는 2020. 7. 17.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자인 G저축은행에 400,000,000원을 송금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D는 2020. 8. 14.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100,000,000원을 C이 아닌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마. 이 사건 아파트는 C이 소유하던 유일한 부동산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 매매잔금 100,000,000원을 D로부터 자신이 지급받았어야 함에도, 이를 피고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을 증여한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위 돈 중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원고가 C와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사이에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 대출거래계약서(갑 제1호증의 1)는 C이 작성한 적 없는 허위의 계약서이다.

2) 피고가 C이 지급받을 이 사건 아파트 매매잔금을 대신 송금받은 것에 대하여, C과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이 송금받은 금전을 피고에게 중국적으로 귀속시킨다는 의사의 합치가 없었으므로, C과 피고 사이에 증여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 피고가 송금받은 100,000,000원 중 35,000,000원은 C이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고, 나머지 65,000,000원은 피고가 C에게 매달 현금으로 1,000,000원가량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C의 부탁으로 I, 거래처 수수료 등 C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3) 설령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C과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않아 C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한바,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1) H의 C에 대한 대출금채권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은 2020. 5. 7. H로부터 17,000,000원을 이자율 연 24%, 연체이자율 연 24%, 대출만기일 2023. 5. 7.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H가 C에 대하여 갖는 채권을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유한회사 J(이하 'J'라 한다)와 H의 채권양도계약 체결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H는 2022. 12. 28. J에 2022. 12. 28.자로 잔존하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원리금 및 지연손해금 이와 관련된 권리 일체를 양도한 사실, H는 J에 C에 대한 채권양도양수 통지에 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하였고, J는 2023. 1. 3. C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위와 같은 채권양도양수 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원고와 J의 채권양도계약 체결 갑 제2호증의 3,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3. 4. 3. J로부터 J가 H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원리금, 지연손해금 및 이와 관련된 권리 일체를 양수한 사실, J는 원고에게 C에 대한 채권양도양수 통지에 대한 권한 일체를 위임하였고,

원고는 2023. 4. 5. C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위와 같은 채권양도양수 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 잔존 원리금 상당을 피보전채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원고 피보전채권 금액 2022. 12. 28.자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원금 12,341,452원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가 2,093,651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자 발생 기준일은 2022. 4. 14.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대출계약에서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률을 모두 연 24%로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2024. 8. 30.까지의 원리금, 지연손해금 합계액은 원고가 구하는 20,340,146원을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위 20,340,146원을 원고의 피보전채권 금액으로 인정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재 여부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고(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등),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4157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C의 무자력 여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2020. 8. 14. 기준으로 부담하는 채무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9,202,475원이다.

내용 생략	할부금융	2018. 7. 20.	476,000
할부금융	2019. 4. 24.	4,672,000	
카드론	2019. 7. 29.	775,000	
카드론	2019. 8. 9.	10,000,000	
카드론	2019. 8. 10.	8,924,000	
현금서비스	2020. 6. 9.	2,750,000	
현금서비스	2020. 4. 29.	3,100,000	

내용 생략	할부금융	2018. 7. 20.	476,000
현금서비스	2020. 6. 9.	300,000	
현금서비스	2020. 6. 9.	600,000	
현금서비스	2020. 6. 2.	2,000,000	
주식회사 H	대출 원리금	2020. 5. 7.	35,605,475
합계	69,202,475원		

반면, 갑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K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의 2020. 8. 14. 당시 적극재산은 2020. 7.경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D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45,000,000원뿐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C은 2020. 8. 14.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C과 피고의 2020. 8. 14.자 증여계약 체결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다룬다면, 위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309484 판결 등 참조).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76321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C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지급받을 매매잔금 100,000,000원을 C 대신 피고의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2024. 8. 16. K은행에 대한 금융정보회신결과, 2024. 10. 7.자 IBK 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이 피고에게 송금한 100,000,000원 중 원고가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라고 자인한 21,000,000원을 제외한 79,000,000원에 대하여는 C와 피고 사이에 위 돈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증여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이 지급받을 매매대금을 피고가 대신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C이 피고에게 100,000,000원 중 79,000,000원의 범위에서 이를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증여계약은 C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① 피고는 2019. 11. 14.부터 2020. 6. 2.까지 C에게 총 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C 역시 피고에게 2020. 4. 30. 9,000,000원, 2020. 5. 31.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만약 피고가 위 기간 동안 C에게 지급한 35,000,000원을 대여금으로 보더라도, 그 이후 C이 피고에게 합계 14,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C에 대한 채권액은 21,000,000원에 불과하다.

② 피고는 C의 부탁으로 I에 매달 C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고, C의 부탁으로 C의 거래처 대금을 대신 송금하였으며, 현금을 인출하여 C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③ 위와 같이 피고 측 영역에서 발생한 거래에 관하여 피고는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는 자신이 C에게 대여한 돈이 35,000,000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이를 훨씬 초과하는 100,000,000원이나 되는 돈을 받았음에도 그 송금 이유 자체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④ 피고는 C이 지급받을 이 사건 아파트 매매잔금 100,000,000원을 대신 송금받은 후 위 금액을 피고의 예금과 따로 구분하지 않고 피고가 사용하던 IBK 기업은행 계좌에 그대로 예치해두었다. 피고는 위 금액을 송금받은 이후에도 피고 소유의 위 IBK 기업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수차례 인출하고, 피고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위 계좌에 예치된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즉, 피고가 C 대신 송금받은 매매잔금은 피고의 기존 IBK 기업은행 예금채권과 혼용된 것으로 보이고, 위 금액은 피고에게 귀속되어 피고의 용도에 따라 소비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⑤ C이 이 사건 아파트 매수인인 D로부터 매매 잔금 100,000,000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피고에게

다시 송금하는 행위와 C이 위 100,0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대신 지급받게 하는 행위를 다르게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다.

다.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므로(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C과 피고 사이에 2020. 8. 14. 체결된 증여계약은 위 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20,340,146원의 한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20,340,14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며,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없어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반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C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을 C의 거래처 채무를 변제하고, C에게 현금으로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피고 주장에 따르면 피고와 C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피고는 C이 피고에게 C의 돈을 피고의 통장으로 받아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후 C이 피고에게 C의 요청에 따라 C 및 C이 요청하는 사람에게 위 돈을 송금해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C의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피고로서는 C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들의 권리행사를 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부탁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유석동